

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명

### ○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!

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, 최재란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### 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시장 및 교육감이 국가기관에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된

법령의 제·개정을 건의하는 경우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,

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

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시장 및 교육감이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, 이에 대한 통제나 정보의 공개는 미흡한 상황입니다.

- 이러한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다면, 상임위원회에서는 미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.
-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!  
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 의사를  
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.

천만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 
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 
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 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